◆ 11월 27일(금)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온라인은 11월 26일(목), 12:00부터 보도

보도자료

2026. 11. 26(목)

한국대학교육협의회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http://www.kcue.or.kr

☎ 02-6919-3911, 3919 대학혁신지원실장 : 서동석, 국가학위정보센터장 : 이정은, 담당 : 김해송

유학생 30만 시대, 대학의 외국 학력 · 학위 심사 역량 높인다

- 대교협, 11월 27일 서울 · 12월 2일 부산서 대학 담당자 자격인정 워크숍 개최
- 교육부 · 법무부 유학생 정책과 연계해 입학자격 심사의 전문성 · 일관성 제고
-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안내와 질의응답, 서울 워크숍 개별대학 컨설팅 진행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이기정 한양대학교 총장, 이하 대교협) 국가학위정보센터*는 외국인 유학생의 입학 자격 심사를 지원하기 위해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11월 27일(금) 서울과 12월 2일(수) 부산에서 「2026년 국가학위정보센터 대학 외국인 입학·국제업무 담당자 자격인정 워크숍」을 개최한다.

* **국가학위정보센터(National Information Center, NIC)**
- 대한민국 정부의 유네스코「고등교육 자격의 인정에 관한 아시아·태평양 지역 협약(도쿄협약)」가입에 따라, 협약에서 규정한 국가학위정보센터(NIC) 설치 의무에 근거하여 한국대학교육협의회를 국가학위정보센터로 지정('19.)
- (주요 기능) 국내·외 고등교육 학위·자격(제도, 기관 인가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제공하여 학위·자격의 상호 인정을 지원하고 한국 고등교육의 국제 통용성 제고

□ 국내 외국인 유학생이 30만 명을 넘어선 가운데, 국가마다 상이한 교육제도와 학위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외국 학력·학위를 일관된 기준으로 심사하는 대학의 역량이 중요해지고 있다.

□ 이번 가이드라인은 교육부의 「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2026. 9월)과 법무부의 「외국인유학생 비자 제도개선 추진 전략(안)」(2026. 10월)에 따른 대학의 학력·학위 검증 및 입학 자격 심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대학이 자체 기준과 실무 절차를 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자격인정의 원칙과 단계별 확인 사항을 담았다.

□ 이번 워크숍은 대학 담당자가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절차를 이해하고 실제 입학 자격 심사에 활용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열린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과 부록을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진행하며, 서울 워크숍에서는 사전 신청한 대학을 대상으로 개별 컨설팅도 실시한다. 외국인 유학생이 재학 중인 고등교육기관 가운데 서울·부산 워크숍에 180여 개교의 담당자 2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 대교협 이경희 사무총장은 “이번 가이드라인이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 입학 자격 심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워크숍에 이어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중으로 개별 대학을 대상으로 자격인정 컨설팅을 실시해 대학이 입학 자격을 전문적이고 일관되게 심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2026년 국가학위정보센터 자격인정 워크숍 개최 계획(안) 1부.
2.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요약본 1부. 끝.

붙임 1 **2026년 국가학위정보센터 자격인정 워크숍 개최 계획(안)**

□ 개요

○ **(배경) 외국인 유학생 학력·학위 검증** 및 **유치·관리** 관련 정부 정책* 이행 지원을 위해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마련

* 교육부「외국인유학생 인재양성 혁신전략」('26.9.), 법무부「외국인유학생 비자 제도개선 추진 전략(안)」('26.10.)

○ **(목적)**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절차에 대한 **대학 담당자 이해도** 및 **입학 자격 심사**의 **전문성·일관성 제고**

□ 행사 세부 내용

○ **(일시/장소)**

- **(서울)** 2026. 11. 27.(금) 10:00 ~ 15:00 / 프레지던트 호텔 슈벨트홀(31F)
- **(부산)** 2026. 12. 2.(수) 10:00 ~ 13:20 / 코모도 호텔 부산 그랜드볼룸(1F)

※ 대학 담당자의 참석 편의를 고려하여 2개 권역에서 각 1회 개최

○ **(참석자)** 국내 외국인 입학(학위인정·입학사정 등) 관련 업무 담당자 등

○ **세부 일정(안)**

시간	주요 내용	비고
09:30~10:00 (30분)	· 참석자 등록	
10:00~10:05 (5분)	· 개회사 및 환영사	대교협 교육부(안)
10:05~10:25 (20분)	· 발표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소개**	대교협
10:25~10:45 (20분)	· Q&A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의 이해와 활용**	
10:45~11:00 (15분)	· 커피 브레이크	
11:00~11:30 (30분)	· 발표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부록 소개**	NIC 자문위원
11:30~13:00 (90분)	· 점심식사	
13:00~13:20 (20분)	· Q&A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부록의 이해와 활용**	NIC 자문위원
13:20~15:00 (100분)	· 개별대학 컨설팅 ※ 서울 개최 워크숍 및 사전신청 대학에 한함	**서울 워크숍만 진행**

※ 워크숍과 별도로 개별대학 대상 자격인정 컨설팅을 '26년 말 또는 '27년 초에 실시 예정

붙임 2 고등교육 자격인정 가이드라인 요약본

❑ 배경 및 근거

○ (**고등교육 국제화**) 고등교육 분야 외국인 유학생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이 **국가별로 다양한 교육제도, 학제, 학위체계**를 비교하여 **외국 자격의 효력을 판단**할 일관되고 객관적인 **실무 가이드라인 부재**

* 국내 유입 외국인 유학생 수(KEDI, 만 명): ('24) 20.9 → ('25) 25.3 → ('26. 4.) 30.7

○ (**국제협약**) '25 4월 대한민국이 비준한 **「고등교육 자격인정에 관한 글로벌 협약」**(이하 '글로벌협약')은 대학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외국 학력·학위를 입학 자격요건으로 평가·인정**하도록 규정

○ (**국내 법령**) 대학이 지원자의 **「고등교육법」 제33조에서 정한 입학자격 충족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외국 학력·학위의 인정** 여부를 결정

❑ 고등교육 자격인정의 개념 및 주요 원칙

○ (**자격인정**) 고등교육 자격인정은 외국 자격의 **국내 대학 입학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권한 있는 인정 당국(대학)이 공식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뜻함

< 고등교육 자격인정 주요원칙(글로벌협약) >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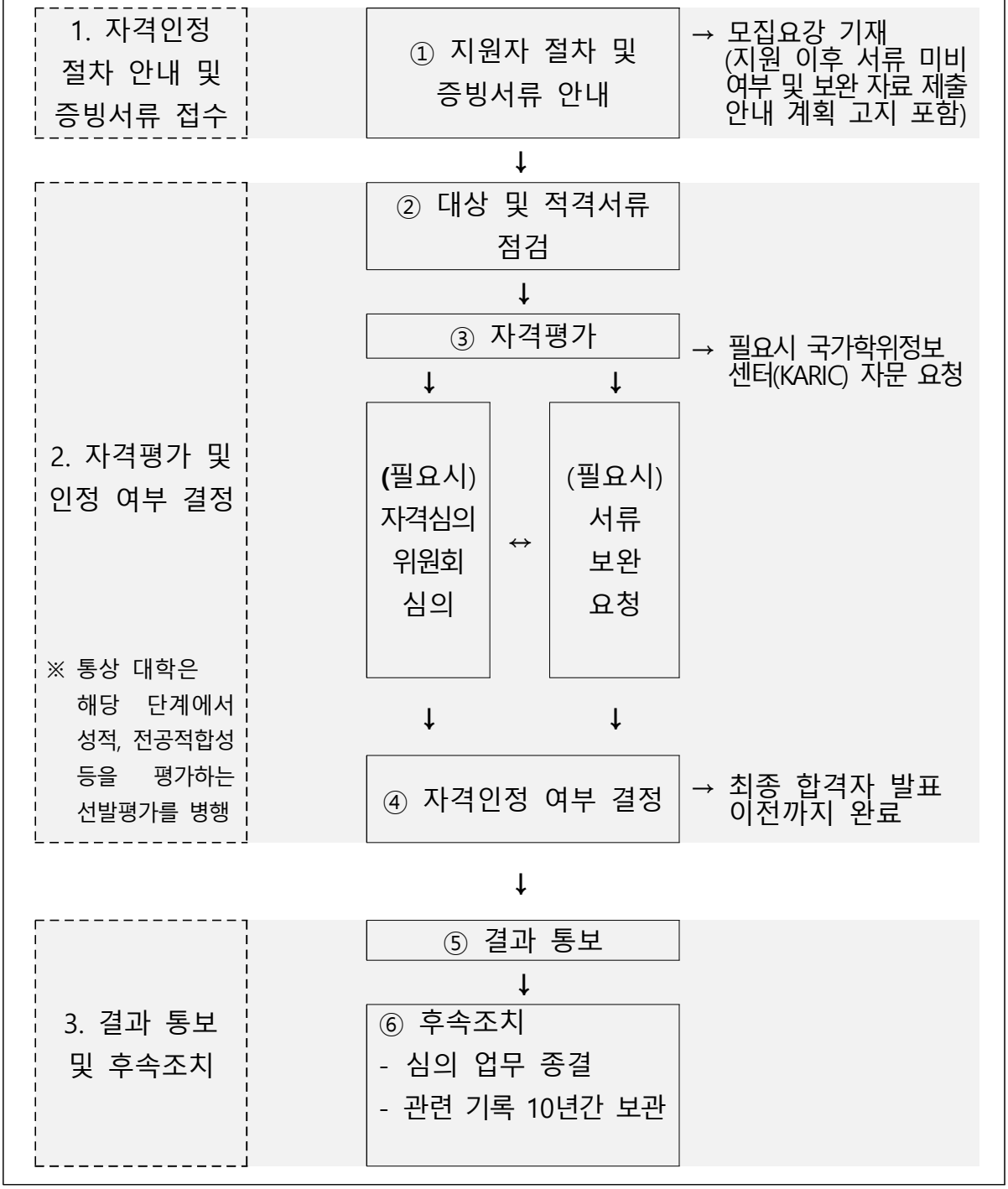
- 시기적절하게 해외 취득 자격을 평가(제3.2조)
- 투명성, 일관성, 신뢰성, 공정성 및 비차별성에 근거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자격을 평가하고 인정(제3.3조)
- 적절한 정보에 기초하여 인정 결정(제3.4조)
- 인정이 보류되거나 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하는 경우, 자격 소지자가 합리적인 기한 내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절차 마련(제3.6조 및 제3.7조)

자격 소지자

- (권리)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요청하여 시기적절하게 자격에 대하여 평가받을 권리(제3.1조)
- (의무) 권한 있는 인정 당국에 신의성실하게 적절한 정보 제공(제3.7조)

❑ 고등교육 자격평가 절차

< 대학 입학 지원자 자격평가 절차 흐름도(예시) >



※ 위 절차는 학생의 수학능력 또는 어학능력 등 학업역량을 평가하는 '선발평가' 단계와 별도로 입학 자격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하는 '자격인정'에 관한 내용임

※ 대학에서는 '자격인정'과 '선발평가'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거나 동시에 진행하는 등 자율적으로 시행 시기를 결정하여 실시

❑ 자격평가 세부절차별 준수사항

○ (**대상 확인**) 대학은 **학위과정별로 상이한 입학자격을 고려하여** 발급국 학제상 수업연한 및 상급학교 진학권, 발급기관의 법적 지위, 발급기관인가 여부, 논문 작성 여부 등 **확인사항을 과정별로 달리 검토**

< 학위과정별 주요 확인사항 >

학부 신입학

- 고등학교 졸업 여부: 졸업증서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 대학입학자격 : 발급국에서 고등교육 진학권을 부여하는지
- 수업연한 : 발급국 학제와 한국 학제 비교
- 국가시험 : 졸업시험, 대학입학시험 등 시험 여부
- 학교 인정 여부 : 학교가 발급국에서 공적으로 인정되는지

학부 편입학

- 전적대학 지위 : 전적 고등교육기관의 법적 인정 여부
- 이수 내용 : 이수학기, 이수학점, 수업연한, 성적
- 과정 수준 : 학위과정 소속 여부, 전문학사·학사 과정 여부

대학원

- (석사)학사학위 또는 동등 자격 : 학습량, 자격 수준, 발급국 내 학사학위로서 인정여부 및 석사 진학권 등
- (박사)석사학위 또는 동등 자격 : 학술학위·전문학위 구분, 발급국 내 석사학위로서 인정여부 및 박사 진학권, 논문·연구요건 등
- (통합)학사 또는 석사 수준 자격 : 자격 수준 및 관계 법령과 대학 모집요강에서 정한 지원 요건, 발급국 내 학사 또는 석사학위로서 인정 여부 등

○ (**자격평가**) 대학은 제출된 **외국 자격의 이수학기, 공식 인가 여부 등**을 국내 자격과 비교·대조하여 **국내의 어떠한 학력·학위 수준과 효력에 상응하는지** 평가

○ (**입학자격 인정**) **대학의 자체적인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자격 충족 여부 결정**

※ 학위 발급기관 명칭이 불분명하거나 논문 없는 석사 등 대학 자체 판단이 어려운 경우 국가학위정보센터(KARIC) '자격인정 Q&A 서비스' 이용 시 관련 정보 제공

– (결과) 입학자격 인정의 결과는 대학 학칙, 모집요강 및 내부 심사절차로 정함

※ (예) ▲지원 가능 ▲추가자료 제출 필요 ▲보류 ▲지원자격 미충족 등

– (심의) 선례가 존재하지 않아 **판단이 어렵거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례**는 **기존 학내 심의기구 또는 「자격심의위원회(가칭)」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결정

※ 예시안을 참고하여 대학에서 자체 규정(안)을 마련하여 심의기구 운영

< 대학 내 자체 「자격심의위원회(가칭)」 구성 및 심의 예시안 >

○ 대학은 지원자의 자격평가를 위해 「자격심의위원회(가칭)」를 두어 운영할 수 있음

○ 「자격심의위원회」의 역할

- 학내 외국 학력·학위 자격인정 기준 및 심사 절차 확립
- 증빙서류 미비, 초국경교육·비전통적 방식 등으로 별도 자격 검증이 필요한 사례 심의
- 자격평가 결과에 대한 지원자의 이의신청(항소) 심의 및 최종 결정

○ 「자격심의위원회」 구성(안)

- 입학처장 또는 국제처장(위원회장), 지원자의 전공 관련 교수, 외국인 입학담당 실무자 등으로 O인 이상 구성

※ 대학별 조직 및 업무분장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을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고, 대학별 규정·지침에 따라 명칭을 달리 정하거나 다른 위원회 또는 기구에서 동 위원회의 역할을 겸하게 할 수 있음

※ 필요시 대학이 자체 판단하여 국제처장과 입학처장을 모두 위원으로 둘 수 있으며, 외부 전문가 등 외부위원 추가 위촉 가능

○ 「자격심의위원회」 심의 기간

- 심의 시작일부터 00일 이내에 심의 결과 판정을 포함한 모든 조사를 완료하여야 함
- 자격 검증 및 보완이 완료되지 않아 00일 이내에 심의 결과를 판정할 수 없다고 '보류' 판정할 경우, 대학이 정한 자격심사 및 보완서류 제출기한 내 추가 검증·보완을 실시할 수 있음. 다만 해당 기한까지 자격확인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대학의 학칙·모집요강 및 내부 절차에 따라 해당 지원자의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 심의 방식

- 관계 법령, 대학 학칙 및 모집요강, 발급국의 교육제도 및 자격 정보 등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심의하되, 결과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표결로 결정할 수 있음.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함

○ 기피·제척·회피

- 지원자는 심의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음
- 심의위원은 당해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안건의 심의·의결에 관여할 수 없음
- 위원은 위의 기피·제척 사유가 있는 때에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회피할 수 있음

○ (**통보**) 대학은 **자격인정 결과**를 지원자에게 **별도로 통보하지 않고**, 학칙 및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전형 결과를 통보할 수 있음**

– (기록·보관) 대학은 **자격인정 결과와 판단 근거를 기록·보관**하여 향후 동일 또는 유사 사례에 일관되게 활용

– (후속조치) 대학은 관계 법령, 학칙 또는 내부 절차에 따라 자격인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또는 재검토 절차**를 운영할 수 있고, **지원자는 해당 절차에 따라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재검토를 요청**할 수 있음

❑ 자격평가 시 실질적 차이의 판단

○ (**실질적 차이 원칙**) 대학은 외국 자격과 국내 자격 간 **명확한 실질적 차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자격인정 가능성을 우선 검토**(글로벌 협약 제4.1조)

* 수업연한, 논문 유무 등 형식적 차이가 아닌, 발급기관·프로그램의 인가 여부와 발급국 내 상급학교 진학권 등 상급학업에 필요한 수준 및 역량 충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차이

< 형식적 차이와 실질적 차이의 구별 >

형식적 차이	실질적 차이
• 국가별 학제의 차이 • 학위 명칭의 차이 • 수업연한의 차이 • 학점 체계의 차이 • 교육과정 운영방식*의 차이 (학기제·쿼터제, 온라인 수업 비율 등)	• **발급기관**이 발급국 내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 해당 자격이 발급국에서 학위로서 인정받지 않거나 **상급학교 진학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 **학위 또는 자격을 발급할 법적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급한 경우 • **교육 제공기관과 학위 발급기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교육과정의 공적 인가 또는 인증**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제출자료만으로 자격 취득 사실 또는 자격 수준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 온라인·원격 교육을 기계적으로 배제하기보다, 발급기관과 프로그램의 발급국 내 공적 인정 여부, 학위 발급 권한 유무, 질 보장·인증 여부, 해당 자격의 발급국 내 상급학교 진학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인정 여부를 결정

○ (**적용 사례**) 대학은 제출된 외국 자격과 국내 자격 간 단순한 **형식적 차이만으로 자격인정을 제한해서는 안 됨**

< 자격인정을 제한할 수 없는 사례 >

‣ 예시 1 : 3년제 학사 소지자의 석사과정 지원 (수업연한 차이)

유럽 볼로냐 체계의 3년제 학사 소지자가 국내 석사과정에 지원한 경우, **해당 학위는 발급국 내에서 석사과정 진학권을 부여**하므로 국내 4년제 학사와의 단순 수업연한 차이만으로 **자격인정을 제한할 수 없음**

‣ 예시 2 : 논문 없는 석사 (졸업 요건의 차이)

미국 등에서 논문 작성 없이 코스웍(coursework) 이수 또는 캡스톤 프로젝트로 석사학위를 취득한 자가 국내 박사과정에 지원한 경우, **해당 자격이 발급국에서 석사학위로 인정받고 박사과정 진학권을 부여**한다면 논문 유무만으로 **자격인정을 제한할 수 없음**